##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0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 송갑석 · 이용빈 · 민형배

윤영덕 • 전용기 • 최인호

이정문 · 임종성 · 박범계

정춘숙 · 이형석 · 김경만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업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4/104의 공제율이각각 적용됨.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 법률 제 호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의 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 율       |
|--------|--|---------|
| 2. 제조업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br>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br>업자 | 106분의 6 |
|        | 나. 가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
| 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  | 액 공제특례) ①         |
| 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 |                   |
|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                   |
|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                   |
| 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                   |
|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   |                   |
| 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                   |
| 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                   |
|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                   |
|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                   |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    |                   |
| 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                   |
|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    |                   |
| 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                   |
| 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
|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   |                   |
| 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                   |
|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                   |
| 수 있다.              |                   |

|                          | 구분   | 율  |
|--------------------------|--|--|
|                          | 가.「개별소비세<br>법」제1조제4<br>항에 따른 과<br>세유흥장소의<br>경영자                                | 102분의 2  |
| 1. 음<br>식점업              | 나. 가목 외의<br>음식점을 경<br>영하는 사업<br>자 중 개인사<br>업자                                  | 108분의 8<br>(과세표준<br>2억원 이<br>하인 경우<br>에는 2021<br>년 12월<br>31일까지<br>109분의<br>9) |
|                          | 다. 가목 및 나<br>목 외의 사업<br>자  | 106분의 6  |
|                          | 가. 과자점업, 도   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   업 중 떡방앗   간을 경영하   는 개인사업   자                 | 106분의 6  |
| <u>2.</u> 제<br><u>조업</u>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   영하는 사업   자 중 조세   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 및 개인사   업자 | 104분의 4  |
|                          | <u>다.</u> 가목 및 나<br>목 외의 사업<br>자   | 102분의 2  |
| 3. 제1호<br>사업             | 도 및 제2호 외의   | 102분의 2  |

| 가  |     |
|--|-----|
|  |     |
|  |     |
|  |     |
| 나  |     |
| 1   '  |     |
|  |     |
|  |     |
|  |     |
|  |     |
|  | _   |
| 다<br>  |     |
|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 및 개인   사업자 | 의 6 |
| <u>나. 가목 외의</u><br><u>사업자</u> <u>102분</u> -        | 의 2 |
| 3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